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4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박상혁 · 이해식 · 강준현

김영환 · 김주영 · 이연희

한민수 · 허 영 · 정준호

남인순 · 이강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계약이 아닌 계약에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u> <u>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u> <u>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지역</u> <u>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u> <u>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u> <u>계약이 아닌 계약에 가맹계약</u> <u>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 ~ 7. (생 략)</u> ⑦ . ⑧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